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구 미 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2026년도분 지방채 발행 ⇨ 20,000백만원

- 1) 문화산단 조성 부지매입 : 10,000백만원
- 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4,500백만원
- 3)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 5,500백만원

2. 제안이유

가. 첨단산업국

1) 문화산단추진단

가) 문화산단 조성 부지매입 : 10,000백만원

- (1) 산업부·문체부·국토부 「문화선도산단」 합동 공모 구미시 선정(‘25. 3. 25.) 및 조성에 따른 사업 추진 기반 마련, 해당부지(공단동 282 일원)를 청년·문화·산업이 만나는 복합문화 거점으로 조성하여 첨단산업과 일자리·문화·복지 등이 어우러진 산업단지로 전환 추진
- (2) 이에 따라 문화산단 조성 부지매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재정여건 상 2026년도 구미시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하여 「지방채정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환경교통국

1) 대중교통과

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4,500백만원

- (1)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소를 통한 시민 정주 여건 개선 및 화물운수종사자의 편의 증진 기여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필요함.
- (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가 68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계획에 맞는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 (3) 이에 따라 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재정여건 상 2026년도 구미시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사업소

1) 시립중앙도서관

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 5,500백만원

- (1) 구미시립중앙도서관은 1993년 준공이후 30여년간 노후되어 환경개선이 시급하며, 인근 3, 4주공 재건축에 맞추어 이용자 중심 커뮤니티 공간, 복합 문화공간조성 등 청년세대의 변화된 문화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2)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및 불확실성 확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로 인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신속한 공사비 집행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이에 따라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재정여건 상 2026년도 구미시 지방채 발행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발행개요

□ 2026년 지방채 발행

○ 세부내역

(단위:억원)

부서명	사업명	신청액	소관	비고
계	3개 부서, 신청 3건	200		
문화산단 추진단	문화산단 조성 부지매입	100	산업건설위원회	
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45	산업건설위원회	
시립중앙도서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55	문화환경위원회	

4. 주요내용

가. 문화산단 조성 부지매입

1) 지방채 발행계획

- 발행액 : 100억원
- 차입선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 연리 : 3%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비
- 발행방법 : 증서차입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2026년
- 위치 : 구미시 공단동 282 일원
- 총사업비 : 259억원(시 159, 지방채 100)
- 사업규모 : 토지 50,248㎡, 건물 2동(연면적 18,721㎡)
 - ※ 전체 토지 129,626㎡, 건물 연면적 18,721㎡
- 공정율 : 80%(경계측량 및 감정평가 완료, 협상 진행중)



3)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 핵심 부지를 확보하여 문화산단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설계 및 공사 등 후속 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의 안정성 제고 필요
- 단기간에 집중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지방채 발행 및 계획적인 상환관리로 초기 재정부담의 분산이 필요

4)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5,900	-	25,900	-	
국 비	-	-	-	-	
도 비	-	-	-	-	
시 비	15,900	-	15,900	-	
지방채	10,000	-	10,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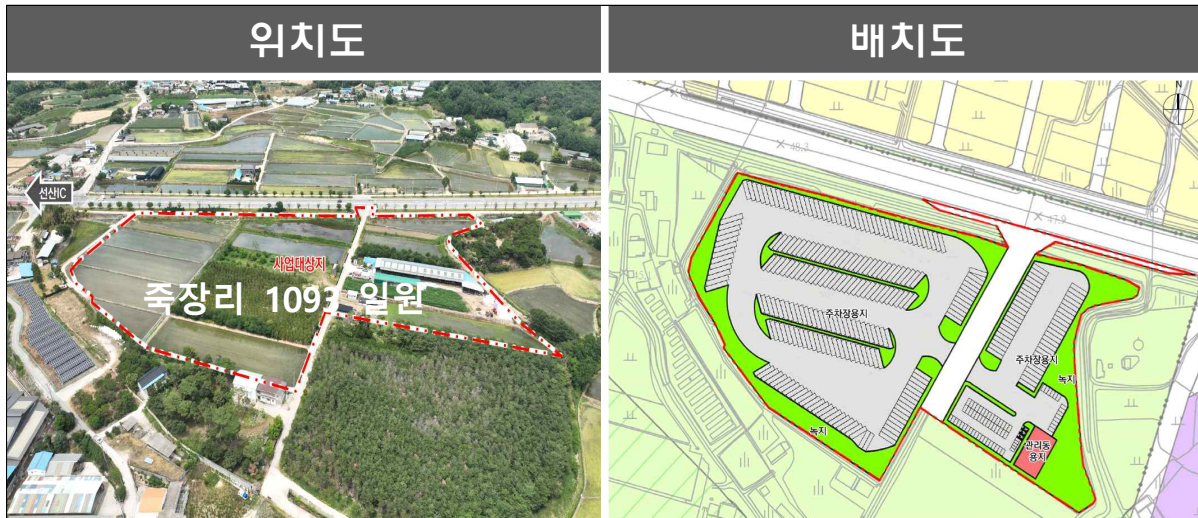
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 지방채 발행계획

- 발행액 : 45억원
- 차입선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 연리 : 3%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비
- 발행방법 : 증서차입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위치 :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1093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9,800백만원[도비(전환) 9,100백만원, 시비 10,700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7,355m², 주차면수 342대(화물 271, 승용 71),
관리동(연면적 500m²)조성 등
- 공정율 : 10%



3)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따라 화물차량 수가 증가하며 나타나는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영차고지의 안정적인 조성이 필요. 시기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신속한 토지 소유권 확보

4)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9,800	-	10,800	9,000	
국 비	-	-	-	-	
도 비	9,100	-	2,800	6,300	
시 비	6,200	-	3,500	2,700	
지방채	4,500	-	4,500	-	

다.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 지방채 발행계획

- 발행액 : 55억
- 차입선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 연리 : 3%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상환재원 : 시비
- 발행방법 : 증서차입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7년 12월
- 위치 : 구미시 경은로 85 일원
- 총사업비 : 19,504백만원(전환 7,122, 도 800, 시 11,582)
- 사업규모 :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리모델링 1식(연면적 8,395m²)
- 공정율 : 10%



3)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 계획성 있는 재원확보로 신속히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자주 찾는 문화공간인 도서관이 빠르게 개관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4)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9,504	5,612	8,457	5,435	
국 비	-	-	-	-	
도 비	7,922	2,201	2,957	2,764	전환 7,122
시 비	6,082	3,411	-	2,671	
지방채	5,500	-	5,500	-	

5. 근거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11조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

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및 제45조

마. 「도서관법」 제29조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6.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⑤ 생략

□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⑤ 생략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생략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 「도서관법」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예산재정과
입 안 자	과 장	조 민 규
	팀 장	김 원 대
	담 당 자	조 형 우 (480-2535)